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46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윤한홍 · 박덕흠 · 김상훈
이종욱 · 권성동 · 강명구
박상웅 · 박수영 · 김도읍
엄태영 · 김대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대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록·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게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5항까지의-----

-----.